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박람회 청년 창업기업 모집 연장 공고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 청년 창업가 아이디어 제품 전시·판매·홍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창업기업 성장 기틀 마련과 청년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년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8월 21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박람회
- 행사기간: 2024. 9. 11.(수)~9. 12.(목)
- 행사장소: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일원(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 참여대상: 도내 청년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대학생, 시민 등
- 주요내용: 전북 청년 창업가 제품 전시·판매·홍보 및 창업 문화 확산
- 주최/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내용: 전시 및 판매 부스 지원, 창업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전시 및 판매 부스	창업프로그램
제품 전시 및 판매 부스 지원	특강, 토크콘서트, 상담(멘토링), 네트워킹 등

- 프로그램 내용: 기념식, CEO특강, 전시·판매 부스, 토크콘서트 등

II 모집개요 및 신청

□ 모집개요

○ 모집대상: 도내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 대표자가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인 기업(1984. 8. 7. 이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2017. 8. 7. 이후 창업)

○ 모집규모: 약 50개사 내외

※ 모집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스내역: 전시 부스, 판매 부스 등

- 부스 1동 / 기본 조명 / 부스 벽체 / 기업명 현수막

- 테이블 1개, 의자 2개(인원별로 의자 추가 가능)

※ 부스 타입은 전시 부스와 판매 부스 동시 신청 불가

※ 부스 사이즈는 선택 불가하며 지원 아이템에 따라 분배 예정

□ 신청자격

구 분	모집대상
전시 및 판매 부스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기준 도내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7년 이내 기창업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4. 8. 7. 이후 출생자** 2017. 8. 7. 이후 사업자등록기업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설립연월일)• 부스에서 판매 및 전시(홍보) 가능한 기업• 식품 및 주류 판매 부스의 경우 주관/주최 측 협조 후 운영

□ 신청기간(연장): 2024. 8. 7.(수)~8. 27.(화) 18:00

□ 신청방법: 전북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event.jbci.or.kr>)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업로드

- 신청서 수정 및 접수 확인은 공고 마감일까지 가능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 플랫폼' 접속이 차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연번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필수	1부
2	■ 행사 참가 제품 소개서		필수	1부
연번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개인	사업자등록증	필수	-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2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 대표자 신분증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사태 접수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언론에 기사화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 식품 등 판매업체 및 다단계 업체
 - 제외되는 업종*으로 본 행사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참고1]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 기타 창업박람회 적합하지 않은 업체

III 참여기업 선정

□ 선정일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위원회 구성

- 외부 인사 중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
 - 외부 인사 심의를 통한 공정성 확보
- 기업 모집 완료 후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위원회 결과 기업 안내

IV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타인의 신청서를 도용할 경우 센터 모든 사업에서 3년간 배제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센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본부 창업허브팀

(TEL: 063-220-8917, 8936 / ohm@ccei.kr)

참고1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 부동산업	L68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 일반유희주점업	56211
5	○ 무도유희주점업	56212
6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7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8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9	○ 무도장 운영업	91291
10	○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고

참고2

참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박람회”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모집 및 선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주최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②“참가자”라 함은 본 행사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및 기타 제반 서류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개인을 말한다.

③“행사”라 함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박람회를 말한다.

④“주관자”라 함은 “익산시”, “원광대학교”, “전북중소벤처지방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말한다.

제3조(참가신청) ①행사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반 서류(전시품목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모집기간 이후 신청 또는 판매예정 품목이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 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행사 사정에 따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가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제4조(부스배정) ①주관자는 판매물품에 따라 부대시설이용, 면적,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행사 부스를 배정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 부스 위치를 참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스 관리 및 의무사항) ①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물품을 판매하며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행사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할 경우, 또는 판매 상품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판매중지 및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③주관자는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행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참가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행사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⑤참가자는 행사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행사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회복 요청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⑥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행사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매물품, 방법, 마케팅 활동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참가자는 주어진 전시공간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

제6조(계약, 신청 등 부스절차) ①참가자의 결정은 자체 선정위원회의 평가에서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②참가자는 판매에 필요한 준비를 정해진 기일 안에 준비해야하며 주관자는 참가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차순위업체에게 참가기회를 부여한다.

제7조(부스판매내역) ①판매부스는 구성하며 유형별로 주관자가 결정하여 자리를 선정 후 통보한다.

②참가자는 물품 판매 시 현금,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축소) ①선정자가 참가를 취소를 원할 경우 행사 시작 전(24. 8. 30.)까지 고지해야하며 행사 당일 취소의 경우 주관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참가취소 또는 축소 시 주관자가 정한 양식을 행사 시작 전(24. 8. 30.)까지 고지해야 한다.

③참가 취소 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행사 등에 반영한다.

제9조(행사 취소 또는 변경) ①주관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 혹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 행사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 청구할 수 없다.

②행사 취소 및 변경 시 참가자측은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사 물품 반입, 진열, 반출) ①참가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에만 주관자가 정한 기간 내에 장치 및 판매물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참가자는 주관자가 정한 기간 내에 모든 판매 물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이 지연되어 생기는 손실이나 행사장 손상에 관해서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①주관자는 행사관계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참가자는 판매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내의 장치물 및 판매물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판매 물품 등에 대한 일체의 보험 부보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방화규칙) ①행사 진행 시 방화와 관련한 대비를 주관자가 하여야 한다.

②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우천 및 온열규칙) ①우천 시 행사운영 규모, 시간 등이 조절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참가자측에서 이의를 제시할 수 없다.

②주관자는 우천에 관한 대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주관자는 행사 진행 중 온열 관한 대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14조(보충규칙) ①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참가자는 주관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해결) ①본 참가규칙 및 계약조건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②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